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

울산시, 환경부 관련법 예고에 '불허용'재차 강조

(울산=뉴스1) 이원호 기자

입력: 2014.04.11 08:44:55

“울산은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가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허용 불가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울산시는 최근 환경부가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와 관련, 음식물 분쇄기 허용 불가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환경부의 법률안 입법예고와는 관계없이 “울산지역은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시의 단호한 정책 방향의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허용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의 정상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SBK음식물자원화시설(180톤/1일),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100톤/1일)가 1일 27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처리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돼 있다.

하지만 음식물 분쇄기가 허용될 경우 이같은 시설이 무용지물 된다. 또한 울산지역 하수관 옥내배관은 100mm 이하로 굵어지는 부분에서 하수관 막힘 현상이 발생해 하수가 시가지 내 넘쳐나는 심각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울산시는 신축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거로 내보내는 ‘처리기’를 편법으로 설치,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시민들의 비협조로 실패 파악에 실패한바 있다.

울산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에 흘려보낼 경우 주방용 하수관거내 음식물 찌

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수질 악화는 물론, 하수관로 부식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며 “지금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등 오염예방을 위한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허사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의 하수도법 개정안은 음식물 분쇄기의 사용범위(지역), 사용기준 절차, 불법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불법위법 판매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 분쇄기 사용허용 논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 등에서 시작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